

10 (第123回-保健社會第2次)

<p>10.기타 한센병관리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</p> <p>제3조(사업의 위탁) ①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탁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4조(시설의 설치·운영)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단체에게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하여 부속시설을 설치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(사업보고)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단체는 위탁사업에 대한 실적을 매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탁기관의 선정 및 지도·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사회복지에 관한 정책 방향·시행 계획 등 중요사항 연구·조정 2.노인·장애인복지 및 아동·여성보호에 관한 시행 계획 및 정책·제도 개선사항 심의·건의 3.생활보장사업의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4.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 관장 사항의 심의·의결 5.기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·건의 <p>제4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행정(1)부시장, 여성정책관, 보건복지국장은 당연직이 된다.</p> <p>②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행정(1)부시장과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p> <p>③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, 여성정책관,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.</p> <p>④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사회복지, 노인·장애인복지와 아동·여성 보호 및 보건사업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.사회복지, 노인·장애인복지 또는 아동·여성보호사업을 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사업을 행하는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3.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<p>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②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</p> <p>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
<p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자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및 사단법인 한성협동회 서울특별시지부간에 체결한 제2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.</p>	<p>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②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</p>
<p>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명 "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 설치조례"를 "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"로 한다.</p> <p>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조직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를 삭제한다.</p> <p>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3조(기능) 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</p>	<p>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
<p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</p>	<p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<p>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그 위촉된 위원의 임기동안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.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“사회복지시설”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하는 노인·장애인·아동복지 관련 시설과 사회복지관 및 부랑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.</p> <p>2.“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”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.</p> <p>제3조(설치 등)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·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·위치 및 그 주요 기능은 별표와 같다.</p> <p>제4조(적용범위)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제5조(이용자의 자격) ①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, 부랑인 보호시설은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 안의 부랑인으로 한다. ②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한다.</p>	<p>1.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치 및 명칭 2.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 3.위탁기간 4.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7조(수탁자 선정)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의 효율성 및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수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시설관리 등)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경과조치)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공공시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설치·운영 중이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·운영 중이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시설로 본다.</p> <p>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의 여성정책관(여성개발담당관)란의 시설명란중 “○시청 어린이집·보육정보센터”를 “○시청 어린이집”으로 하고, 같은 표의 같은 란 중 “○시립아동복지시설”, “-시립 소년의 집”, “-시립동부아동상담소”, “○시립 영보자애원”은 이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표의 보건복지국(사회복지과)란, 보건복지국(노인복지과)란 및 보건복지국(장애인복지과)란은 이를 각각 삭제한다.</p>
--	---